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48호 2024. 1. 24.(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1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4-11호	도로명주소 고시	3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112호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신청 공고	4
거창군 공고 제2024-113호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 사업 신청 공고	7
거창군 공고 제2024-123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0
거창군 공고 제2024-129호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3차 공고	29
거창군 공고 제2024-133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42
거창군 공고 제2024-13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3
거창군 공고 제2024-139호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	61

회 람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4. 1. 24.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4년 1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4.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촌2길 132-95 등 4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40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37-6 등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신청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9.(금) ~ 2. 2.(금)
2. 사업명 :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3. 신청대상 : 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임야대장등본 1부
 - 사업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6,000/1, 예정구역도 표시) 1부
5. 제출기관 : 산림과(산림조성담당) 및 읍·면사무소
6. 선정방법 및 절차 : 붙임참조
7. 문의사항 :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3),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2024. 1. .

거창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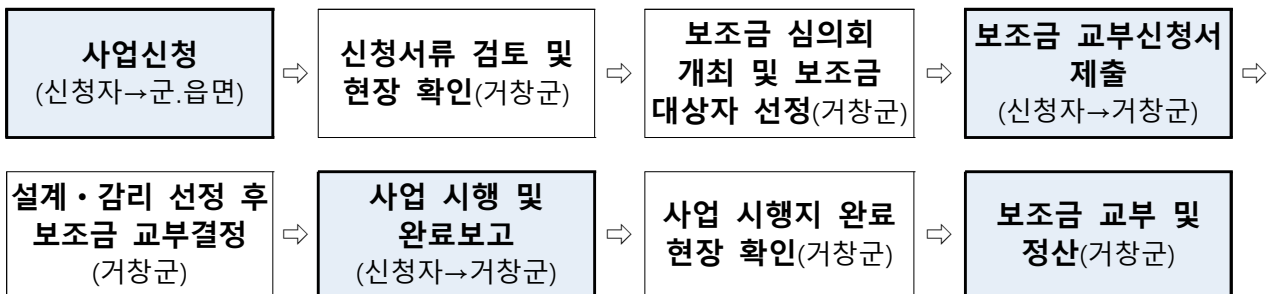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 ~ 4.
- 대 상 지 : 신청대상지
- 사 업 량 : 조림 20ha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 지원내용 : 조림 사업비 지원(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 완료 후 정산
-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
 - ※ 동점자 발생 시 자체 우선순위 규정에 의거 선정
- 추진절차



2024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 신청서

□ 산림소재지 : 거창군 읍·면 리 산 번지

□ 지 적 : m²

□ 신청면적 : ha

□ 희망수종 : 나무

- ※ 산림청 고시 제2023-134호(2023.12.29.) 산림용 종묘가격이 고시된 산림용 수종만 조림신청 가능
- ※ 조림사업은 임업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산림소유자(산주)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하여 시행할 수 없음
- ※ 본 사업을 시행 후 5년 이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타용도 전용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변상금(설계·감리비, 보조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위 사항을 확인했으며, 2024년도 산주직접실행 조림사업을 신청하오니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

신청인(산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자 격 : 독립가 / 임업후계자 / 임업인

거창군수 귀하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 신청 공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9.(금) ~ 2. 2.(금)
2. 사업명 :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
3. 신청대상 :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임야대장등본 1부
 - 사업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6,000/1, 예정구역도 표시) 1부
5. 제출기관 : 산림과(산림조성담당) 및 읍·면사무소
6. 선정방법 및 절차 : 붙임참조
7. 문의사항 :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63),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2024. 1. .

거창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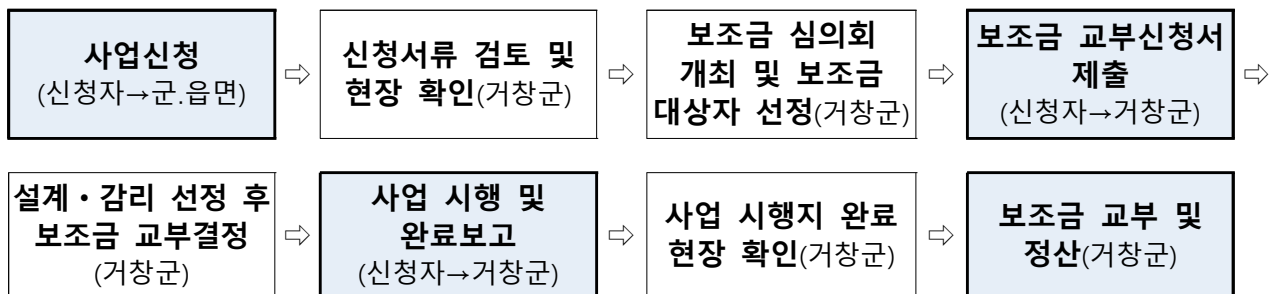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 ~ 11.
- 대 상 지 : 신청대상지
- 사 업 량 : 숲가꾸기 25ha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 지원내용 :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보조 100%)
- 지원방법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행 완료 후 정산
- 선정방법 : 자체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
 - ※ 동점자 발생 시 자체 우선순위 규정에 의거 선정
- 선정절차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 신청서

산림소재지 : 거창군 읍·면 리 산 번지

지 적 : m²

신청면적 : ha

산림수종 : ※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 잡목 등 작성

작업구분 :

※ 작업구분은 천연림보육(임상이 좋은곳), 천연림개량(임상이 좋지 않은곳) 등 작성

※ 숲가꾸기 사업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 산림소유자(산주)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대행하여 시행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시행 후 5년 이내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타용도 전용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변상금(설계·감리비,보조금)이 부과될 수 있음.

위 사항을 확인했으며, 2024년 산주직접실행 숲가꾸기사업을 신청하오니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

신청인(산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자 격 : 독립가 / 임업후계자

거창군수 귀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 례

- 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2)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 (안 제3조)
-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료 (안 제5조)
- 4)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 (안 제7조)

나. 시행규칙

- 1)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행규칙 목적 (안 제1조)
- 2)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신청 (안 제3조)
-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감면신청 등 (안 제4조)

4. 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 붙임2, 붙임3

5.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 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2. 8.(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 1) 주소 : (우 51032)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2) 전화 055-940-3364, 팩스 055-940-3349, 이메일: kiiunh@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055-940-3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시행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2]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6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회의실, 체육문화시설,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에는 경우에는 휴

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이 용 료
대회의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요일은 20% 가산
소회의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요일은 20% 가산
무인세탁실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체력단련실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0원
실내테니스장	1회 (1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별표 2]

이용료 감경기준(제5조제2항관련)

감경대상	감경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100분의 100
다음 각 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세대	100분의 50

[붙임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세탁실 이용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3조(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감면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이용신청과 동시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제2조 관련)

변경 사유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일시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p>년 월 일 귀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거창군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p> <p>거 창 군 수 귀 하</p>			

【별지 제3호서식】

이용 승인서(제2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용료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이 용 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이 용 료</th> <th style="width: 30%;">이용료 부과내역</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p>「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제2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				
<p>「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귀하의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 창 군 수 (인)</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일괄개정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호이동2014.5.28)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

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 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타조례개정 2021.9.29.)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후단삭제 2014.5.28)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3차 공고

거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할 청소년동반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인구교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명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 관내 위기청소년 찾아가는 상담업무 · 기타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업무

2. 응시자격 요건

가.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채용분야	자격요건
청소년 동반자	· 채용 확정 시 거창군 내 거주가 가능한 자 *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이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건임
	· 관련 자격증 * 1개 이상 소지한 자
	·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 * 1년 이상인 자

1) 관련자격증 및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p>▶ 1개 이상 소지자</p>	<p>▶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p>

나. 공통사항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라.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기타 채용조건

- 1)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일제 직업 소지자는 신청 불가
- 2)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불인정

바. 가점 대상자

- 1) 법정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2)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사. 근거법령 및 기준

- 1)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3)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4)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등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나. 보 수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청소년동반자 보수)에 의함

※ 연 33,300천원 내외(기본급, 사례진행비, 자격수당, 연차수당 등)

다. 근로기간 : 2024. 2월 중 ~ 2024. 12. 31.(11개월)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일제)

※ 운영 상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마.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바. 근무내용 :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업무 등

- 1)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매뉴얼’ 을 사전 열람 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 > 전자도서관 > 정보검색 > 본원간행물(PDF) 검색메뉴에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개정3판)” 의 내용 확인 가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관련, 응시연령 등 응시 적격 여부
- 2) 자격 적격자 전원 합격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①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 면접위원 3명 예정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4. 1. 22.(월) ~ 1. 29.(월) / 8일간
- 2) 원서접수 : 2024. 1. 23.(화) ~ 1. 29.(월) / 7일간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발표 : 2024. 1. 30.(화) / 개별통보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2. 1.(목)

-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부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2. 5.(월)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 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마.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바. 자격검증 동의서(서식4) 1부
-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 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5) 1부
- 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바.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055-940-8709)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합격자 제외),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사. 채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① **응시분야** :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 ②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③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 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④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 ⑤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⑥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

이 력 서

사 진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주택) H·P)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학위)	
	~					
	~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급)		업 무 내 용	
	~					
	~					
	~					
	~					
	~					
	~					
	~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청소년동반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최종학력,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주요경력 등
- 자격, 경력, 최종학력 이외의 학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 기한 완료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에 제한이 있으며, 선택항목 중 자격·경력의 동의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제공포함)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3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청소년상담사)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거창군 아동보호전담요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거창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거창군 공고 제2024-133호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 관련 10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거창군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1)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조례(안) 10건

나. 주요내용

1)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2)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문화관광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432

이메일: falsalee@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 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정대상

- 1)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조례 10건

나. 주요내용

- 1)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 2)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2호 중 “문화재보존”을 “문화유산보존”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를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단서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각각 한다.

제6조(「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법」 「경상남도 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

관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를 "「문화유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제8조의2, 제14조 중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각각 한다.

제8조(「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문화유산청	가. 문화재 문화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제9조(「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로 한다.

제10조(「거창군 계획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 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6조(경제복지국)</p> <p>② 2. 문화예술, 축제, 관광정책, 문화재 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p> <p>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p> <p>5. 국가지정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p> <p>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p> <p>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감경률은 100분의 25로 한다.</p> <p>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2조(정의)</p> <p>1. “문화시설등” 이란 거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체육·문화재·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 장소를 말한다.</p>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입금의 사용)</p> <p>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 유적을</p>	<p>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6조(경제복지국)</p> <p>② 2. 문화예술, 축제, 관광정책,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p> <p>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p> <p>5. 국가지정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p> <p>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p> <p>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감경률은 100분의 25로 한다.</p> <p>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2조(정의)</p> <p>2. “문화시설등” 이란 거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체육·문화유산·기념 시설 등 또는 군에서개최하는 지역축제·행사 장소를 말한다.</p>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수입금의 사용)</p> <p>②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거창신씨 요수종중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p> <p>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존·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유산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 유적을</p>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 이라 한다)“이란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 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법」 「경상남도 문화유산보호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문화유산법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전수교육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1. 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공연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 3. **무형문화재**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무형문화재**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료의 감면)

2.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려는 경우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거창군 계획조례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물” 이란 「**문화재보호법**」 에

- 3. **무형유산**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전수교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료의 감면)

2.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을 공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려는 경우 **제14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유산청	가. 문화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유산** 등 화재, 붕괴

거창군 계획조례

제49조(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물” 이란 「**문화유산법**」 에

<p>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p> <p>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p>	<p>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p> <p>2. 「문화유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p>
--	---

거창군 공고 제2024-134호

「국가유산 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 관련 5개 규칙 일괄 정비를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거창군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규칙 정비를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법령불부합 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대상

1)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규칙 5건

나. 주요내용

1)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2)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3. 제정 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432

이메일: falsalee@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문화관광과장

1. 제안 이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정대상

- 1)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규칙 5건**

나. 주요내용

- 1) 용어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 2)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규칙** 제 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중 **연구관·연구사**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 문화유산 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제3조(「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 제4호 문화관광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6. 문화재 문화유산 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문화재 매장유산 등 비지정문화재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업무

제4조(「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

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제8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자연경관보전능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 집단과 역사,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답례품의 우선 선정)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연구사·연구사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p> <p>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호 본청 담당관·과,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4.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16.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p> <p>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제8조(심사협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문화재 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사</p>	<p>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답례품의 우선 선정) 1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2]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연구사·연구사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p> <p>(이외는 현행과 같음)</p> <p>거창군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호 본청 담당관·과,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 분장사무(제7조관련) 4. 경제복지국 문화관광과 16.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매장유산 등 비지정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업무</p> <p>거창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마. 「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제8조(심사협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건축, 조경, 전기, 통신, 기계, 문화유산 등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p>

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자연경관 보존지역 지정기준)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자연경관 보존지역 지정기준)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공고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 결정한 소규모수도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거 창 군 수

1. 내 용 :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
2. 사 유 : 대체급수시설 확보(지방상수도 급수)
3. 근 거 : 「거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
4. 대 상 : 거창군 거창읍 셋단마을 소규모수도시설 1개소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결정 내역

연번	위 치		시설명	폐지사유	폐지 후 급수대책	비 고
	읍·면·동	리				
1	거창	송정	셋단	지방상수도 공급	지방상수도 급수	

끝.